

	안산대학교교회규정	규정번호	3-7-8
		제정일자	2011.09.01.
		개정일자	-
		개정차수	-
		소관부서	안산대학교교회

제1장 총 칙

제1조(정의)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학칙 제12조 2항에 의거하여 안산대학교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교회는 안산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기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로서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고, 안산대학교의 교내외 선교를 지원하며, 소속 교우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다.

제2장 교회 정치의 원리

제4조(근거)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5조(성경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믿으며 성서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됨을 믿는다.

제6조(교회의 주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제7조(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3장 교 인

제8조(자격) 누구든지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제9조(책임) 교인은 정기에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할 의무를 진다.

제10조(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장 조 직

제11조(교역자 및 전문봉사자) ① 교회에 담임목사와 전도사를 두며, 필요에 따라 협력목사를 둘 수 있다.

② 담임목사는 감리교단이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담임목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④ 전도사는 담임목사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⑤ 협력목사는 담임목사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⑥ 성가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등의 전문봉사자는 담임목사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12조(분과) 목회활동을 돕기 위해 상설분과와 비상설분과를 둔다.

1. 상설분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예배분과 : 예배 및 성례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

나. 교육분과 : 교회 교육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

다. 선교분과 : 국내외 선교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

라. 재무분과 : 교회 재정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

마. 사회봉사분과 : 국내외 구제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

바. 관리분과 : 교회의 시설관리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

2. 비상설분과는 필요에 따라 장학위원회, 대학생·영어·중국어예배, 홍보·출판 분야 등 비상설분과를 둘 수 있다.

제13조(부서) 교회에 교회학교, 청년회, 청장년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성가대, 기타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부서를 두며, 각 기관은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의 회칙을 만들 수 있다.

제5장 회 의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교회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교회의 운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사안들을 2개월에 1회 심의하고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가. 담임목사(위원장)

나. 협력목사

다. 제13조의 각 부서의 대표

2. 임명직 위원 : 각 상설분과 위원장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장 재 정

제15조(재정관리) ① 교회의 재정은 자체 헌금과 안산대학교의 보조금 그리고 개인 기부금등으로 운영한다.

② 교회의 회계는 대학 회계와는 별도로 특별회계로 하며, 회계년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로 한다.

③ 교회의 예산과 결산은 재무분과에서 작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원칙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회계년도 종료 전에 등록된 교인에게 공지한다.

1.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전도/교육, 구제/봉사 및 교회 운영은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2.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하여야 하며 결산은 내부 감사를 기본으로 하되 외부기관의 감사도 받을 수 있다.

3.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4.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16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제14조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다.

제17조(시행세칙) 이 규정 외 기타 시행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대학교 관련 규정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